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5호

「화물적재고박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5-01호, 2015.0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0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인용법령 표기방법 개선, 현 직제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정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 재검토 기한 재설정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 표기방법 개선(안 제1조, 제2조, 제4조제1항, 제6조제3호라목, 제11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정(안 제2조~제8조, 제10조~제12조, 별표 1, 별표 2), 현 직제반영(안 제7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8조)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고시 재검토기한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를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5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중형산적용기”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형산적용기를 말한다.

제2조제10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상자 안에 넣은 화물등”을 “상자 안에 넣은 화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이라 함은 선박방화구조기준 제2조제18호”를 “이란 「선박방화구조기준」 제2조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어려운고철”을 “어려운 고철”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라 함은”

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산적액체화물외”를 “산적액체화물 외”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화물고박지침서는 「선박복원성기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선박만재흡수선기준」 및 「강선의 구조기준」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GM“이라 한다”를 ““GM”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라목 중 “해상에 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 제5장”을 “「해상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5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 중 “해양수산관청”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동등이상”을 “같은 수준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

에”를 “규정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해양수산관청”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동등이상”을 “같은 수준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한 기준”을 “따른 기준”으로, “해양수산관청”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동등이상”을 “같은 수준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3.5톤 이상 40톤 이하인 도로용자동차

제10조제2항제2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3.5톤 이상 40톤 이하인 도로용자동차

제10조제2항제3호 중 “45톤이하”를 “45톤 이하”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조제1호”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주입·배출율”을 “주입·배출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해양수산물관청 또는 지정검사기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1)(나) 비고 4) 및 같은 세호 중 “신체횡방향”을 각각 “선체횡방향”으로 한다.

별표 2 V 제2호자목 후단 중 “외이어코일”을 “와이어코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기준은 <u>특수화물 선박운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u> 제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 및 고박하기 위한 화물적재 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 및 작성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표준화화물”이라 함은 개별적인 적재 및 고박장치가 필요한 화물을 말한다. 2. “반표준화화물”이라 함은 자동차, 트레일러등과 같이 한정된 종류의 화물에 사용할 수 있는 고박장치가 있는 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3. “표준화화물”이라 함은 컨테이너등과 같은 특정형태의 화물에 기초하여 승인된 고박장치가 있는 선박 (이하 “표준화화물 운송선박”이라 한다)으로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p>제1조(목적) ----- 「<u>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u>」 제2조의5의 규정에 따라 ----- ----- ----- ----- ----- -----.</p> <p>제2조(정의) ----- ----- <u>뜻은</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이란</u> ----- ----- -----. 2. ----- <u>이란</u> ----- ----- ----- -----. 3. ----- <u>이란</u> ----- ----- ----- ----- -----.

4. “최대고박하중”이라 함은 고박장치의 최대허용하중을 말한다.

4. -----이란 -----

-----.

5. “이동식탱크”라 함은 선박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아니한 용적이 450리터를 초과하는 탱크로서 외부안전장치, 기체·액체 또는 고체 화물의 운송에 필요한 부속설비 및 지지구조가 있는 것을 말한다.

5. -----란 -----

-----.

6. “이동식용기”라 함은 선박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아니한 용적 1,000리터이하의 기체 또는 액체화물운송용용기로서 이동식탱크가 아닌 것을 말한다.

6. -----란 -----

-----.

7. “바퀴달린 화물”이라 함은 버스, 군용자동차, 트랙터, 땅고르는 기계 또는 세미트레일러 등과 같이 바퀴나 트랙이 있는 화물로서 트레일러 및 예인자동차와 트레일러의 결합체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7. -----이란 -----

-----.

8. “금속중량물”이라 함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봉, 관, 판 또는 와이어코일 등과 같이 무거운

8. -----이란 -----

화물을 말한다.

9. “중형산적용기”라 함은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형산적용기를 말한다.

10. “규격화물”이라 함은 팔레트(pallet)와 같은 화물적재판에 놓인 다수의 포장화물을 띠로 묶거나(strapping) 수축포장(shrink wrapping)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고박한 화물 또는 팔레트상자와 같은 보호외벽이 있는 상자안에 넣은 화물등을 말한다.

11. “도로용자동차”라 함은 화물자동차, 세미트레일러, 자동차와 트레일러의 결합체, 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의 결합체 또는 이러한 차량들의 결합체를 말한다.

12. “도로용탱크자동차”라 함은 기체, 액체 또는 고체화물의 운송을 위한 탱크를 영구적으로 장착한 도로용자동차로서 선박안에서는 당해 탱크에 화물을 주입 또는 배출하지 아

-----.

9. “중형산적용기”란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형산적용기를 말한다.

10. -----이란 -----

그 밖의 -----

----- 상자 안에 넣은 화물 등-----.

11. -----란 -----

-----.

12. -----란 -----

니하는 것을 말한다.

13. “세미트레일러”라 함은 예
인자동차에 연결된 트레일러
로서 당해 트레일러에 적재된
화물중량의 상당부분이 예인
자동차에 부과되는 것을 말한
다.

14. “로로선”이라 함은 선박방
화구조기준 제2조제18호의 규
정에 의한 로로구역이 있는
선박을 말한다.

15. “산적고철”이라 함은 크기,
형상 또는 질량 때문에 차곡
차곡 적재하기 어려운고철로
서 보링(boring)·절삭 또는
선반가공등으로 생기는 금속
부스러기등을 제외한 것을 말
한다.

16. “고박각도”라 함은 수평면
과 고박줄이 이루는 각도를
말한다.

17. “하역부두대리인”이라 함은
선박이 적양하하는 동안에 하
역부두회사 또는 기타 시설회
사가 지정 하고 그 선박의 적
양하 작업을 책임지는 사람을

-----.

13. -----란 -----

-----.

14. -----이란 「선박방화구
구조기준」 제2조제18호-----

-----.

15. -----이란 -----

----- 어려운 고철-----

-----.

16. -----란 -----

-----.

17. -----이란 -----

----- 그 밖의 -----

말한다.

제3조(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등) ①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은 산적고체 및 산적액체화물외의 화물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에만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제4조(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일반요건) ① 화물고박지침서는 선박복원성기준,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선박만재흡수선기준 및 강선구조기준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② 화물적재고박지침서는 당해 선박의 항행중 예상되는 최대외력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5조(비표준화·반표준화화물의 적재 및 고박) ① 비표준화·반표준화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조(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등) ① -----

----- 산적액체화물 외-----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일반요건) ① 화물고박지침서는 「선박복원성기준」,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선박만재흡수선기준」 및 「강선의 구조기준」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② ----- 해당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비표준화·반표준화화물의 적재 및 고박) ① -----

----- 각 호-----.

1. · 2. (생략)

3. 황천항해중 선박의 각 위치에서 예상되는 가속도 및 메타센타높이(Metacentric Height 이하 ??GM이라 한다)를 나타내는 도표

4. ~ 9. (생략)

10.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한 화물(당해 선박에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에 한한다)의 적재 및 고박 기준

가. ~ 아.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정보처리장치 또는 선적용컴퓨터>Loading computer)등으로부터 제1항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제1항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표준화화물의 적재 및 고박) 표준화화물 운송선박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

----- “GM”이라 한다-----

4. ~ 9. (현행과 같음)

10. -- 각목-----

가. ~ 아.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규정에도 -----

제6조(표준화화물의 적재 및 고박) ----- 각호-----.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한 적재 및 고박계획
 가. ~ 다. (생략)
 라. 1974년 해상에 있어서인 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 제5장 제22규칙에 의한 시계 범위내에서의 최대겹침 적재높이
 마.·바. (생략)
 4. ~ 6. (생략)
 7. 특별한 화물적재상황에 선장이 대처할 수 있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기타 적재 방법에 관한 자료
 가. ~ 라. (생략)
 8. ~ 13. (생략)
 제7조(고박효율성 평가방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속도, 화물에 작용하는 외력, 고박장치의 강도 및 최대고박하중 등은 별표 1에 정한 기준 또는 해양수산관청이 인정한 이와 동등이상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제8조(고박장치의 명세) ① 제5조 제1항제7호 및 제6조제11호의

3. --- 각 목-----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해상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5장 --

 마.·바.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7. -----

 ----- 그 밖의 -----

 가. ~ 라. (현행과 같음)
 8. ~ 13. (현행과 같음)
 제7조(고박효율성 평가방법) ---

 ----- 해양수산부장관----- 같
 ----- 은 수준 이상-----
 -----.
 제8조(고박장치의 명세) ① ----

규정에 의한 고정식고박장치의 명세, 배치도 또는 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박장치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 마. (생략)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존선(1998년 1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을 말한다)의 경우 고정식고박장치의 명세, 배치도 또는 표에는 고박장치의 최대고박하중 및 위치에 관한 자료만 포함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항제8호 및 제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식고박장치의 명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박장치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 마. (생략)

2. 3. (생략)

제10조(고박기준등) ① 제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적재 및 고박기준중 비표준화화물의

각 호--.

1.----- 각 목-----

가. ~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규정에도 -----

-----.

③ -----

----- 각 호--.

1. ----- 각 목-----

가. ~ 마.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제10조(고박기준등) ① -----
----- 따른 -----

적재 및 고박기준은 별표 2에
정한 기준 또는 해양수산관청이
인정한 이와 동등이상의 기준이
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의 반표준화화
물을 운송하는 로로선의 로로구
역의 고박장치 및 반표준화화물
의 고박점배치기준과 제5조제1
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적재
및 고박기준중 반표준화화물을
운송하는 로로선의 적재 및 고
박기준등은 별표 3에 정한 기준
또는 해양수산관청이 인정한 이
와 동등이상의 기준이어야 한
다.

1. 질량이 3.5톤이상 40톤이하
인 도로용자동차

2. 적재된 화물을 포함한 총
질량이 3.5톤이상 40톤이하인
도로용자동차

3. 적재된 화물을 포함한 총질
량이 45톤이하인 예인자동차
와 세미트레일러의 결합체

제11조(화물적재 및 고박의 감독
등) ① 선장은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

----- 해양수산부장관
----- 같은 수준 이상-----
-----.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 따른 기준
-- 해양수산부장관-- 같은 수
준 이상-----
-----.

1. -----3.5톤 이상 40톤 이
하인 도로용자동차

2. -----
-----3.5톤 이상 40톤 이하
인 도로용자동차

3. -----
-- 45톤 이하-----

제11조(화물적재 및 고박의 감독
등) ① -----
----- 각 호-----

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위험물(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납한 컨테이너 또는 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등을 적재하는 경우 컨테이너위험물명세서 또는 자동차위험물명세서등의 확인

4. 5. (생략)

6. 당해 항해에 필요한 예비고박장치의 비치

② (생략)

제12조(적양하 작업) ① 선박으로 고체화물을 산적운송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구조에 과도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사항을 국·영문으로 작성한 책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생략)

2. 평형수 주입·배출율 및 량

3. ~ 7. (생략)

② 고체산적화물이 선적되거나 양하되기전에 선장과 하역부두

-----.

1. 2. (현행과 같음)

3.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

4. 5. (현행과 같음)

6. 해당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적양하 작업) ① -----

1. (현행과 같음)

2. ----- 주입·배출률 -----

3. ~ 7. (현행과 같음)

② -----
